

지방관서의 국정감사에 관한 건의(안)

의안 번호	126
----------	-----

발의년월일 : 1992. 9. 25

발 의 자 : 운영위원장

1. 주 문

-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의 폐지 및 중앙부처의 지방관서에 대한 감사권의 지방의회 위임에 관한 건의임.

2. 제안이유

-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불합리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의 폐지와
- 지방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중앙부처의 지방관서에 대한 국회의 감사권을 지방의회에 위임하여 줄것을 건의하는데 있음.

3. 건의내용

-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제 폐지
-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서에 대한 감사권의 지방의회 위임

建 議 文 (案)

尊敬하는 朴浚圭 國會議長님께,

民主化와 地方化의 물결속에 民主安定과 國家發展에 勞心焦思하시고 議政活動에 바쁘신 國會議長님께 온 道民과 함께 感謝를 드립니다.

地方自治의 空白期를 清算하고 全國民의 期待와 歡呼속에서 地方議會가 새롭게 誕生하여 地方化 時代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地方議會에 依하여 地方自治가 實施된지 2年이된 至今까지 國會에서는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國政監査를 繼續 實施하고 있으므로 이에 對하여 우리의 立場을 밝히고자 합니다.

地方自治의 基本原理에 비추어 볼때 國家와 地方의 關係는 憲法上 指揮監督의 上下關係가 아니고, 事務의 性質이나 內容에 따라 協議내지는 同議와 같은 協力, 協同의 關係에 있는 同等한 立場이며, 따라서 自治團體에 對한 國會의 監査는 地方自治制의 理念과 精神에 비추어 볼때 不當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國家가 委任한 機關委任事務와 團體委任事務에 對하여는 當然히 國會가 監査할 權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住民의 立場에서는 自治團體 固有事務와 國家委任事務의 區分이 없고, 그 業務에 대한 行政責任도 역시 國家가 지는 것이 아니고 自治團體의 長이 지고 있으며, 國家委任事務도 相當部分을 地方豫算으로 그 費用을 負擔하고 있으므로 國家委任事務와 固有業務 監査權을 特別히 區分할 必要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地方自治團體에 對하여 國政監査를 繼續할 境遇, 다음과 같은 副作用과 問題點이 惹起될 것으로 豫想됩니다.

첫째, 自治團體는 監査院은 勿論, 內務部를 비롯한 中央 關係部處의 監査, 그리고 自體監査에다 地方議會의 監査를 追加하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國會의 監査까지 加勢할 境遇 自體團體는 行政 本然의 業務보다 年中 監査準備와 受監 事後管理에 餘念이 없게됩니다.

둘째, 地方議會가 構成되고 2년이 되었는데도 不拘하고, 國會가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監査를 繼續할 境遇, 國民的 理解와 共感의 어려움으로 國會의 位相과 權威가 沮害될 憂慮가 있습니다.

셋째, 自治團體에 對한 國會의 監査는 世界의 自治先進國 어느나라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制度입니다.

넷째, 地方議會에서 當然히 監査하여야 할 地方自治團體 管內에 있는 中央部處의 地方官署에 까지 國會에서 監査를 한다는 것은 事理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以上으로 미루어 볼때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國會의 監査는 不當한 일이라 判斷되오니 地方自治制의 早期定着을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國政監査制는 廢止하여 주시고 地方自治團體 管內에 있는 中央部處의 地方官署에 對한 國會의 監査權을 地方議會에 委任하여 주실것을 建議합니다.

1992. 10.

忠清北道議會議員 一同